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8. 9. 25.

사회건설위원회

1. 審 査 經 過

가. 제출일자 : 2008년 9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08년 9월 19일

라. 상정일자 : 제139회 임시회 제1차 위원회(2008년 9월 23일) 상정 의결

2. 提 案 說 明 的 要 旨 (제안 설명자 : 건설교통국장 박주현)

가. 제 정 이 유

- 「주차장법」에 의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장 확보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

나. 주 요 내 용

-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%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조의2 제1항)

-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 해당 조사구역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(안 제1조의2 제2항)
-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내용 보완(안 제5조의2 제4항)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(專門委員 : 이남식)

- 본 조례안은 주차장법 제4조(2003.12.31) 및 서울특별시의 주차장 환경개선 지구지정·운영계획 [주차계획 담당관-7700(2008.5.30)] 에 의거 주차장 수급 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수/자동차등록대수)이 70%미만인 조사구역이나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해소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
-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구역에는 담장 허물기 사업,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,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·공원지하주차장 건설,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됨.

4. 審査結課 : 原案可決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63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08. 9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주차장법」에 의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주차장 확보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기준을 규정하고,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여 개정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이 70%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조의 2 제1항)
- 나.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한 지정·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결정한 해당 조사구역 사업에 예산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(안 제1조의 2 제2항)
- 다. 주차장법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노상주차장 인근 주민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는 내용 보완 (안 제5조의 2 제4항)
- 라. 「스티커를 부착한」을 「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」으로 변경 (안 [별표1] 비고 12호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 법령

1) 「주차장법」

제3조 (주차장 수급실태의 조사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·용도지역·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(이하 "조사구역"이라 한다)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실태를 조사(이하 "실태조사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제4조 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) ①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지역안의

조사구역으로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.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별도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의 계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)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
 2.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
- ② ~ ③ (생략).

2) 「주차장법 시행규칙」

제6조의2 (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의 설치) ①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상주차장의 일부에 대하여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주거지역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으로서 인근주민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2. 법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주차구간으로서 인근이용자의 화물자동차를 위한 경우
3. 대한민국에 주재하는 외교공관 및 외교관의 자동차를 위한 경우
4. 기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자동차를 위한 경우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필요없음.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08. 8. 7 ~ 8. 26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규제심사대상 사무 없음.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조의 2(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·관리) ① 구청장은 법 제4조제1항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)이 70%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

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

2.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

3. 주택가(다세대·다가구 밀집지역)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

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

1. 담장 허물기 사업

2.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

3.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·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,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

4.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

제5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④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별표 1의 비고란 12호 중 “스티커를 부착한”을 “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운휴일을 준수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 설></p>	<p>제1조의2(주차환경개선지구의지정·관리)</p> <p>① 구청장은 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다음 각호의 조사구역으로서 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결과 주차장확보율(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)이 70%미만인 조사구역 또는 주차환경이 열악하다고 인정되는 구역에 대하여는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이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 2. 노상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 3. 주택가(다세대·다가구 밀집지역) 중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지역 <p>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주차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예산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담장 허물기 사업 2. 일반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학교운동장 야간개방 사업 3. 주택가 공동주차장 및 학교·공원 지하주차장 건설 사업, 소규모 평면주차장 조성 사업 4. 민간주차장 설치 자금융자 등

현행	개정안
<p>제5조의 2 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~③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신설></p> <p>[별표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관련) 주차요금표 (생략)</p> <p><비고></p> <p>1. ~ 11.(생략)</p> <p>12. 구청장은 승용차요일제(월화수목금 중 하루 승용차를 쉬게하는 제도)참여 차량으로서 승용차요일제 <u>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이</u>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요금의 20%를 할인해주어야 한다. 다만,1급지에 소재한 주차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<p>13. (생략)</p>	<p>제5조의 2(전용주차구획의 설치·운영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④ 노상주차장 인근의 거주자 또는 상근자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</u></p> <p>[별표1]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(제2조제1항관련) 주차요금표 (현행과 같음)</p> <p><비고></p> <p>1. ~ 11.(현행과 같음)</p> <p>12.<u>전자태그를 부착하고 유희일을 준수한 차량이</u>.....</p> <p>13. (현행과 같음)</p>